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개정 2022. 12. 29.>

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

발급번호 :

우편번호/주소	/전화번호() /팩스번호()	
○○○과	과장 ○○○	담당자 ○○○

귀하

년 월 일

귀하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출국금지 연장기간	. . . 부터 . . . 까지
출국금지 연장사유	
출국금지 요청기관	

※ 안내 사항

1.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,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.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자우편(bordercontrol@korea.kr)으로,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하여,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법무부장관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